

(나) 공연장	품·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폐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다) 숙박업	(머)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과학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라) 유기장, 오락장, 노래장	(버)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마)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서)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바) 차량판매점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어)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사) 예식장	(저)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아) 학원(독서실·고시원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멀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자) 사전현상소	(커)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차)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제외)	(터)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카)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퍼)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타) 발전소	(허)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파) 이발소(미장원 제외)	(고)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하)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거) 화훼, 식목업	
(너)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더) 도살장, 정육점	
(러)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앗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화공약	

서울특별시 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12.
도시관리위원회

1. 경 과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제출일자: 1998.11.11

나.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

○회부일자: 1998.11.17

다. 상정일자

○제16회 정기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98.12.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택국장: 양 감)

가. 제안이유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 삭제(안 제2조의2)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하는 토지

<p>로서 해당공사 또는 공단의 설치조례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대부→삭제</p> <p>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양재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p> <p>○체비지에 대하여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 대부 등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1차회신) -재질의 시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배제하고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6조)에서 체비지 “관리”의 지방재정법 배제 명문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의 배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고(2차회신)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가 공유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는 무상대부 허용기관이 아니므로 동조례제2조의2 규정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바 <p>○양기관 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일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이긴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토록 한 취지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은 차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p> </p>	<p>○생략 5. 토론효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회 구성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만장일치)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p> <hr/> <p>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등부과 ·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등부과 ·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20인”을 “22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중 “의원”을 “의원 3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종사자”를 “종사자 각 1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1999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